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혁만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최근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자전거의 제동장치 장착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,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전거 안전요건 준수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- 자전거의 제동장치 장착 및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7조의3)
-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 운행 과태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7조의4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8월 2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착용”을 “착용 및 자전거 안전요건 준수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 제한 등) ①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,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의4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시장은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게는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자전거 안전모 <u>착용</u> 에 관한 사항	5. ----- <u>착용 및 자전거 안전요건 준수</u> 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3(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 제한 등) ①</u>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,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.
	<u>②</u>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4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u> 시장은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게는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